# 주요 수출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대응 방안



보고서 번호	BSC Report 311-13-001	정보분류 등급	경고, 예측, <u>일반</u>	
규제분류	화학물질	적용산업	화학	
키워드	화학물질 등록, 면제, 한국, 중국,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작성자	박백수 전문위원, 김성훈 연구원, 이은정 이사*	연락처	beaksoo@kncpc.re.kr 02-2183-1512	

\* (주)쉬스케미칼컨설팅(ejlee@sheschem.com 02-719-0100)





#### <요약>

- ㅇ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규정 현황
  - 주요 수출국 :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대만
  - 등록대상물질 : 신규화학물질(한국 화평법 및 EU REACH규정 제외)
  - 등록의무 주체 : 제조자, 수입자, 현지 대리인
  - 심사종류 및 등록서류 내용
  - · 주요 국가별 등록 요구자료 상이 : 인체 건강독성, 환경유해성뿐 아니라 노출 및 위해성 정보 추가
- ㅇ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화학물질 면제 대상
  - 연구개발용, 고분자, 중간체 면제
- ㅇ 사후관리(한국)
  - 실적보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회/4년, 화평법(안) 1회/2년
- ㅇ 국제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능력 중요
  - EU REACH, 일본 개정 화심법, 미국 TSCA, 중국 신규물질 등록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과정에 있는 선도적인 주요국 차세대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 ㅇ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기업 내 전문 인력 필요 : 물질동질성 및 등록서류 작성 및 검토 대응
  - 미 대응 시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 유통 금지(No data No market!)

### <목차>

1. 개요1
2. 주요내용2
2.1. 주요 수출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2
2.2. 주요 수출 국가별 화학물질 면제대상5
2.3. 사후관리5
3.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10
4. 참고자료11





### 1. 개요

- ㅇ 화학산업의 발달에 따른 국내외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가 해마다 증가
  - 2009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유럽 REACH 제도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들\*도 자국 화학물질 규제 관련 제도를 제·개정 중
    - \*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
- ㅇ 국내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 변화
  -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제도 개정. 한국 기업의 조속한 이해를 위한 실제 등록 및 신고 절차 등 필요
  - 국외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2011. 2)
    - \* 2012. 9. 국회 상정, 국회에서 심의 중
  -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적절한 대응 필요
- ㅇ 국제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
  - EU REACH는 시행 중인 차세대 환경 규제의 속성을 가진 신규 규제들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환경
    - \* ECHA(유럽화학물질청) Stakeholder's Day 발표 기준으로 113종의 단속 및 처벌 항목을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범위가 넓은 규제임
  - EU REACH, 일본 화심법('11년 개정), 미국 TSCA, 중국 SEPA 신규물질 등록제도 시행 과정에 있는 선도적인 주요국 차세대 화학물질 등록 관리 제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본보고서는 주요 수출국가의 화학물질 등록 관리 제도를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 대응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2.1. 주요 수출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 ㅇ 주요 수출 국가별 신규물질 여부 확인 방법
  -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를 파악
  - ·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등록 대상 및 의무 주체를 파악한 후, 해당 국가의 의무주체와 물질 등록에 대한 방향을 설정

#### <표 1> 화학물질 등록대상 및 의무주체의 국내외 규정 비교분석

구 분	등록대상물질	의무주체	등록톤수
한국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100kg 이하 ·1톤 이하 ·1톤 이상
한국 (화평법)	·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물질) ·신규화학물질 ·완제품내 의도적 배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전권대리인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중국	・신규화학물질 ・완제품내 의도적 배출 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유럽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완제품내 의도적 배출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미국	·신규물질 ·기존 물질 및 혼합물	・역내제조자 ・수입자	•10톤 이상
일본	・신규화학물질('10.4) -> 현행유지 ・기존화학물질('11.4) -> 평가 신설	•역내제조자 •수입자	·1톤 이하 ·1~10톤
대만	•신규화학물질	•역내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0.01~0.1톤 ·0.1~1톤 ·1톤 이상





- 주요 수출 국가별 심사종류
  - 각 주요 수출 국가별 등록여부를 파악하여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가의 연간 수출량에 따른 심사 종류 파악

<표 2> 주요 수출국가별 심사종류 비교

V교 Z2   교   즐러기를 급세증 II 의표				
구 분	심사종류	톤수		
한국	•간이심사	•톤수 제한 없음		
(유해화학	·정식심사(1톤 미만)	•1톤 미만		
물질관리법)	·정식심사(1톤 이상)	・1톤 이상		
한국 (화평법)	・등록 ・허가 ・면제신고	·신규, 기존화학물질 모두 1~10, 10~100, 100~1000톤, 1000톤 이상		
	• 연구개발신고	·100kg이하(단, 시험샘플용은 정해지지 않음)		
	•특별간이신고	•0.1톤~1톤 연구개발, 중간체(연간 1톤미만)		
중국	• 일반간이신고	·1톤 이하		
	• 보통신고 (계열, 공동, 공동계열, 중복)	•1~10, 10~100, 100~1000, 1000톤 이상		
유럽	・등록(사전 <i>/</i> 본) ・허가	·모두 1~10, 10~100, 100~1000톤, 1000톤 이상 으로 구분		
	・PMN신고	•톤수 제한 없음		
	• 연구개발신고	•톤수 제한 없음		
미국	•소량면제신고	•10톤 미만		
	•시험판매용신고	·최대허용량 10톤		
	•저배출과 저노출 신고	•톤수 제한 없음		
	• 사전심사제도	·1톤 이상		
일본	• 소량신규신청	•1톤 이하		
	•본등록 심사	・1톤 이상		
	• 고지	·10~100kg		
대만	•간이신고	·100kg~1000kg		
	• 완전신고	・1톤 이상		

- ㅇ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시험 수행 결과자료와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 및 제출





### <표 3> 각 국가별 필요서류 비교

· · · · · · · · · · · · · · · · · · ·					
구 분	시험항목 수	위해성평가	필요서류		
한국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최대 10개 항목	1회 <i>/</i> 년	・신고물질의 동질성 자료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시험자료 ・환경 예상배출량 자료 ・제조・사용・노출에 관한 정보		
한국 (화평법)	최대 46 항목 (26개 시험 및 21개 시험 제안서 제출)	100톤 이상 제조 •수입업체	・신고물질의 동질성 자료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시험자료 ・환경 예상배출량 자료		
중국	최대 58개 항목	1톤 이상 제조 ·수입업체	・신고물질의 동질성 자료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시험자료 ・제조・사용・노출에 관한 정보 ・신고물질 환경안전정보		
유럽	최대 61개 항목	10톤 이상 제조 ·수입업체	・신고물질의 동질성 자료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시험자료 ・제조・사용・노출에 관한 정보		
미국	최소제출자료 법 발효 후 1년 이 내에 청장이 공표, 매 5년 이내에 개정	정부	・신고물질의 기본정보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자료 ・제조・사용에 관한 정보		
일본	톤수와 상관없이 물 질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요구	정부	・신고물질의 기본정보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자료 ・운송 및 폐기방법 등		
대만	독성, 생태독성, 물리 •화학적 정보를 제 공하도록 되어 있지 만 구체적인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신고물질의 동질성 자료 ・주요용도 ・물리・화학적 자료 ・독성・생태독성 시험자료 ・제조・사용・노출에 관한 정보 ・환경예상배출량 정보		





### 2.2. 국가별 화학물질 면제 대상

- ㅇ 국가별 적용 제외 및 면제대상 물질
  - 화학물질관리 법체계 및 시행목적에 따라 적용 제외 및 면제대상으로 구분

<표 4> 국가별 적용제외 및 면제대상 비교

			커 ᆽ 근에			
구 분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대만
1. 방사성물질	×	×	×	×	×	×
2. 의약품과 의약외품	×	×	×	×	×	×
3. 마약류	×	_	_	×	_	×
4. 화장품 및 원료	×	_	× (원료제외)	×	×	_
5. 농약 및 원제	×	×	× (원료제외)	×	×	×
6. 비료/사료	×	×	×	×	_	_
7. 식품과 식품첨가물	×	×	×	×	×	×
8. 화약류	×	×	×	_	×	_
9. 독성가스	0	_	_	_	_	_
10. 완제품(Article)	×	× (조건부)	× (조건부)	× (조건부)	×	×
11. 기계장치 내장물질	×	_	×	_	_	×
12. 연구개발용 물질	×	×	×	×	×	_
13. 전량수출용 물질	×	_	_	×	×	_
14. 고분자물질	0	×	0	0	0	0
15. 비분리 중간체	_	×	×	_	×	_
16. 불순물, 부산물	_	×	×	_	×	_
17. 소량면제	×	×	_	×	×	×
기 타 (제외/면제대상)		위험물	<ul> <li>담배/담배 제품</li> <li>자연발생물질</li> <li>사용 중발생물질</li> </ul>	• 각성제	<ul> <li>사험판I용</li> <li>혼합물</li> <li>담배/담배제품</li> <li>자연발생물질</li> <li>사용중 발생물질</li> </ul>	<ul> <li>환경용</li> <li>약품의</li> <li>원제</li> <li>국방방위</li> <li>목적화학</li> <li>물질</li> <li>- 세관</li> <li>- 폐기물</li> </ul>

(○ : 적용, × : 제외/면제, - : 관련규정 없음)





- ㅇ 국가별 심사대상에 따른 면제 확인 및 심사종류 확인
- 연구개발용 면제 규정

#### <표 5> 각 국가별 심사종류 비교

구 분	연구개발용 면제 내용
한국	·시험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
중국	·중국 내 독성 시험을 위한 샘플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단, 연간 100kg)
유럽	<ul> <li>유럽 내 제조자당 100kg/년까지 제한 공정상 양의 제한은 없으나 단, 1년 동안만 면제</li> <li>Scientific R&amp;D</li> <li>PORD(Process Orientated R&amp;D)</li> </ul>
미국	·한계량은 없으나 신규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100kg/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기록 보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일본	·양 제한 및 어떠한 형태의 신고 없이 제조·수입 가능 ·MITI 목록에 없는 물질은 R&D사용에 규제를 받음

#### - 고분자 면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고분자 면제 기준이 다르므로 각 규정에서의 고분자 면제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으로 고분자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및 유독물(무기화합물은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
-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
- 모든 블록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블록고분자화합물
-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그라프트 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 \* 산업 안전 보건법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호)」
-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으로 양이온을 만들지 않고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물 또는 유기용제에 용해되지 않으며 고분자화합물질에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또는 칼슘 이외의 금속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물 또는 유기용제에 용해되는 경우에는 분자량 1,000 미만인 성분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수평균분자량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량체가 탄소간 이중결합, 탄소간 삼중결합, 탄소질소간이중결합, 탄소질소간 삼중결합, 에폭시기, 술폰산기, 히드라진기, 페놀성수산기 또는 불소기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표 6> 각 국가별 고분자 면제 규정 비교

구 분	고분자 면제 내용
한국	·중량비가 2%이하인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제외한 단량체 또는 반응물로 구성된 고분자가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모든 블록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라프트 고분자 화합물
중국	·고분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고분자 정의에 적합한 경우, 함량이 2% 미만의 고분자
유럽	• OECD 고분자 정의를 따르는 모든 고분자는 EU EINECS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을 2% 이상 혼합한 형태가 아니라면 면제됨 - 저우려 고분자 (1) NAMW가 1,000 이상 10,000 이하 (2) 수(water) 추출도가 10mg/l 이하 (3) 수평균분자량이 1,000이하의 1%로 존재하는 고분자
미국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 10,000 미만이 고분자로서 MW 5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10% 미만, MW 1,0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25% 미만이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성 작용기를 포함하지 않음.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고분자로 MW 5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2% 미만, MW 1,000 이하의 올리고머 함량이 5% 미만.
일본	<ul> <li>・고분자 자체 또는 신규 고분자의 적당한 대용물이 일본 MITI 목록에 기재된 경우</li> <li>・후생노동성 : 모노머가 기존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수평균분자량(Mn)이 2,000 이상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정전하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화합물 (2) 총중량 중 탄소의 중량 비율이 32% 미만의 고분자화합물 (3) 유황, 규산, 산소, 수소, 탄소 또는 질소 이외의 원소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고분자화합물 (4) Al, Ca, K, Na 또는 Mg 이외의 금속이온이 이온결합하고 있는 고분자화합물 (5) 생물체로부터 추출하여 분리한 고분자화합물 및 당해 고분자 화합물로부터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고분자화합물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고분자화합물(6) 할로겐 또는 시안기를 가진 화합물에서 생성된 고분자화합물(7) 반응성관능기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고, 당해 고분자화합물의 Mn을 당해 Mn에 대응하는 분자 구조에 있어서 반응성 관능기의 수로 나는 값이 10,000 이하인 것</li> <li>(8) 상온, 상압에서 분해 또는 분해 중합할 염려가 있는 고분자화합물</li> </ul>





- 중간체 면제
  - · 중간체는 전체 화학반응의 과정 중에서 이전 단계의 화학반응에서 생성된 화학물질이 다음 단계의 화학반응에서 소비되는 다른 형태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의미
  - · 불순물이 아닐 경우 중간체는 생산된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 · 비분리중간체는 반응용기나 반응장치에서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

#### <표 7> 각 국가별 중간체 면제 규정 비교

구 분	중간체 면제 내용
한국	・ 화평법에서 비분리 중간체에 대해서는 면제 ・ 상업적인 활동이나 off-site 중간체는 신고 필요
중국	•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는 적용제외 대상
유럽	<ul><li>비분리 중간체, 제한된 장소에서의 중간체는 등록할 필요없음</li><li>수송분리중간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제8항)</li></ul>
미국	<ul><li>분리되지 않는 중간체는 TSCA신고로부터 면제</li><li>제한된 장소에서의 화학물질 중간체에 대한 특별한 면제는 없음</li></ul>
일본	<ul> <li>화심법</li> <li>물질이 제조자의 통제 아래 한 장소에서 소비될 때 site-limited 중간체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수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li> <li>안위법</li> <li>제한된 장소에서의 중간체에 대한 면제는 없음</li> </ul>

### 2.3. 사후관리

- ㅇ 실적보고 대상 및 내용 비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통량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
  - ·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매년 실적보고 실시 : 3월말까지 제출
  - · 화평법(안) : 1톤 이상 제조·수입시 매 2년마다 보고
- 그 외 주요 국가별 실적 보고 대상은 <표8>과 같음





<표 8>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등록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비교

구 분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내용
한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관찰물질	1회/년	
한국 (화평법)	연 1톤 이상 제조· 수입 되는 화학물질	1회 <i>/2</i> 년	등록대상물질이 포함된 혼합물 및 물질 자체의 제조· 수입량, 용도 등
중국	위험화학물질 및 간이신고 등록물질	1회/년	제조 · 수입량 보고
유럽	기존화학물질	_	_
미국	기존화학물질	1회/5년	제조·수입량, 생산장소, 용도
일본	기존화학물질	1회/년	취급상황신고(제조, 수입량, 용도)

### ㅇ 벌칙

- 최근 신규화학물질 등록 불이행, 유독물의 미등록 등에 대하여 각 국가 규제 수준 강화

<표 9>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등록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비교

구 분		위반내용	벌 칙
	유해화학물	•확인명세서 미제출	·200만원 벌금
한 국	질관리법	·신규화학물질 미등록, 유독물 미신고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화평법(안)	·등록대상물질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 화학물질의 변경 등록 미 이행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록면제 미확인 및 허위 면제신고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 보건법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300만원 벌금
중국		•신규화학물질 미등록	•10,000-30,000 Yuan의 벌금 및 위반사항을 일반에 공개
		•허위신고	·위반 시 이전 등록된 등록증 취소
미국		·신규화학물질 미등록 등 민 사적 처벌	·위반건당 최대 37,500 US \$/day
		·형사적 처벌	•금전적 벌금 또는 최대 1년 징역





구 분	위반내용	벌 칙
	·각 국가마다 시행령 적용	
유럽	·독일 등록의무 위반	•5만-25만유로(형사 처분 2년 이 하 징역, 기업최대 5000만유로)
ΤΉ	·이탈리아 등록의무 위반	· 1만5천-9만유로
	·프랑스 등록의무 위반	·최대 1만5천유로(형사 처분 2년 징역과 7만5천 유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미허가 수입 및 제조, 사용 / 신규화 학물질 미등록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벌금
일본	·제2종 특정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사용제품 수입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우선평가화학물질의 제조수량 미신고 및 허위신고	・30만엔 벌금

### 3.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ㅇ 수입 및 생산업자는 등록요건에 따라 규제 대상제품 등록 필요
- 등록대상 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유통 중지
-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 내 대응 프로세스 정립
- REACH 규정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 화평법 내 허가제도 도입,
   등록제도 개정 및 등록 필수 자료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 등록대상물질의 판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규정 확인 필요
  - · 물질특성에 따른 제품의 수출국가에서의 면제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등록비용 저감
- 효율적인 화학물질 대응을 위해 기업 간 물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기업 부담 가중
- 물질 동질성 정보 공유 오류 발생가능성 상존
  - · 대상 물질에 대한 동질성 자료 확보 : 물질의 구조, 순도, 불순물 등
- 중소기업은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 필요
- 화학물질 규제는 모든 산업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산업별·기업규모별 선제대응 할 수 있는 R&D 및 기반 구축 프로그램 필요





### 4. 참고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1호)
-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7호)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호)
-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ㅇ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Index
-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Chemicalwatch; http://chemicalwatch.com/
- ㅇ 중국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지침서2010
- Chemical Inspection& Regulation Service; http://www.cirs-reach.com/
- o REACH24; http://www.reach24h.com/
- Notification Strategies Experience in New Chemical Notification in China(CHEMCON 2012)
- ㅇ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111-10-002
- ㅇ 대만 기존화학물질 추가신고 가이드라인
- Overview of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updates and development in the New Chemical Substance Notification (NCSN) scheme(CHEMCON 2012)
- Chemical Substance Nomination&Notification; http://csnn.cla.gov.tw/ content/index.aspx
- Taiwan Overview on chemical control legislation (labelling, MSDS, existing and new substances, etc) and aspects of GHS(CHEMCON 2012)
- Lessons learned by industry in implementing and complying to new chemicals management in Asia(CHEMCON 2012)
- Compare contrast new chemical notification systems for polymers (CHEMCON 2012)
- o EU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340/2008
- EU REACH 대응 시험역량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7년 12월)
- Development of a global test program, in relation to REACH, New chemical notifications, etc(CHEMCON 2012)





- o 중국, 일본, 대만, 터키의 REACH 유사제도 해설서
- Japanese legal framework for chemical control legislation (eg CSCL, ISHL) and the Japanese GHS implementation(CHEMCON 2012)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http://www.safe.nite.go.jp/ japan/db.html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 ㅇ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111-10-060
- National Environment Agency; http://app2.nea.gov.sg/haz\_sub.aspx

#### - 주의 -

- 1. 본 분석보고서의 저작권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본 분석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서면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도 재생산,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본 분석보고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내용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국제환경 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11-13-001"를 표시해야 합니다.
- 3. 내용 전체를 전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본 분석보고서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